



개인형 이동장치(전동킥보드 등)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내

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?

최근 학생들의 무면허, 안전헬멧 미착용, 동시에 두 명 이상 탑승 등 전동킥보드 관련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.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교통사고는 충격을 몸으로 직접 받기 때문에 다른 종류의 사고와 달리 치명적인 위험성(사고발생 시 **장애** 또는 **사망** 위험이 높음)을 가지고 있어 특히 우리 학생들이 사전에 반드시 예방하고 피해야 할 사고입니다.

특히 '나는 괜찮겠지'라는 안일한 생각이 돌이킬 수 없는 큰 사고를 불러올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.

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가정과 학교가 연계하여 지도가 필요합니다. 전동킥보드 등 사고의 많은 비율이 무면허 학생임을 고려하여, 가정에서는 자녀들이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올바르게 이용하는지 여부를 꼭 확인할 필요가 있으므로 아래의 안전수칙을 꼭 지켜서 운행하도록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무면허 및 동시에 두 명 이상 탑승 금지
- 안전모(헬멧) 등 보호장구 반드시 착용
- 교통신호 준수하고, 자전거 도로 이용해 통행

※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는 현행법상 2021.5.13.부터 원동기 면허(125cc 이하 오토바이 등) 이상 소지자만 이용할 수 있으며, 해당 면허는 **만16세가 되지 않으면 취득할 수 없습니다.** 적발 시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을 받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.

2022. 10. 17.

이 천 남 초 등 학 교 장

Personal Mobility
PM (개인형 이동장치)

전동킥보드, 전동이륜평행차,
전기자전거 등 1인용 이동장치

이것만은 **알고** 타기로 해요!



PM 안전 약속! 꼭! 지키기로 해요!

- ✓ 인명보호장구 착용
- ✓ 음주운전금지
- ✓ 운전 중 휴대폰, 이어폰 사용금지
- ✓ 동승자 탑승금지
- ✓ 자전거도로 또는 차도우측으로 통행
- ✓ 안전거리 확보하며 서행하기
- ✓ 야간에 등화장치 켜거나 발광장치 착용

2021년 5월13일부터는 이렇게 달라져요!

▶ 시행 도로교통법 개정 (처벌조항 : 도로교통법 시행령) ◀

- ① 운전면허 필요(원동기장치자전거 이상)
(범칙금 10만원)
- ① 13세 미만 어린이 사용금지(보호자 과태료 10만원)
- ① 안전모 미착용(운전자 범칙금 2만원, 동승자 과태료 2만원)
- ① 동승자 탑승금지(범칙금 4만원)
- ① 음주운전 금지(범칙금 10만원, 측정거부 13만원)
- ① 후방안전등 미작동(범칙금 1만원)

